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망

☎ 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503-7563 / FAX 504-1392
 복지정책과 과장 진행근 사무관 손진우 담당: 김동현 (E-mail: ksein@mohw.go.kr)

문서번호 복정65115-470

시행일자 2001.10.04. 1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음 받는곳참조

참조

선람	과장	김동현	지시		
접	일자	2001.10.05.	결재	사무관	김문석
	시간	08:57		사무관代	김재성
수	번호	1645	공람		
처리과	복지지원과				
담당자	김혜영				
심사자			심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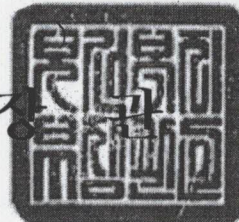
제 목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치를 위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부당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을 통보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2.1.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리방안 1부. 끝.

보건복지부



받는곳 : 각 시도,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정책과.

의료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

1. 현황

-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시·도의 허가 또는 시·군·구에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개설 가능
 - 2001.7월말 현재 118개 법인에서 305개소의 의료기관 운영
 - '98.8. 정부규제완화방침에 따라 법인 28개소, 의원 170개소 증가
- 일부 사회복지법인 허가시 “의료기관운영, 본인부담금 감면”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허가
 - 이를 이유로 내원환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2. 조치사항

가.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 의료기관 운영근거를 목적사업으로 허가 금지
 - 앞으로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시 “의료기관운영, 의료사업”등 의료기관운영 근거를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
-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사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정관 허가 금지
 - 신규허가 및 정관변경시 “본인부담금 감면·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무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일체 정관상에 포함되어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
 - ※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순수한 목적의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아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배

나. 기 허가법인

- 정관개정 조치
 - 허가된 법인 중 “본인부담금 감면·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된 법인은 정관을 개정하여 삭제토록 조치
- 법인관리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도 또는 신고수리 시군구로부터 개설사항을 통보받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관리

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도 및 신고 수리 시군구

- 개설허가, 신고 수리 사항의 통보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개설자)가 되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시도 또는 신고 수리하는 시군구에서는 당해 법인 소재지 시도, 시군구의 담당부서에 개설사항을 통보
 - ※ 다항의 사항은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별도 통보

3. 정관개정 실적보고

- 금년도 12월 말까지 법인 이사회를 개최, 2-나항의 사항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 '02년 1월20일까지 다음서식에 따라 개정실적을 보고

사회복지법인 정관개정실적

총법인수	의료기관 운영법인수	정관변경 대상법인수	정관변경법인수	미변경법인수	비 고
					미변경 사유 및 향후조치 방안 기재